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0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배·김선교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서일준

김소희 • 구자근 • 임이자

박성훈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(안 제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참전명	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
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	
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	
제공할 수 없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
	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
	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
	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
	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